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입안계획서

1. 제명

□ 「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」(관세청 고시 제2025-37호, ’25.7.1.)

2. 개정 사유

□ ‘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’ 개선

□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

□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

□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(이하 ‘특수관계 사전심사’)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

3. 주요 개정내용

□ ‘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’ 개선(§4)

ㅇ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완화

-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(8개 분야) 중 운임·보험료·기타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신고 건별 합계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

ㅇ 미제출 기업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요구 명확화

- 납세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없이도 세관장이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요구를 2차(30일)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

□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 규정 명확화(§24)

ㅇ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입항에서의 도선료, 예선료, 강취료 외에 수입 후 발생하고, 해당 수입물품과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

□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접수증 신설(§43)

ㅇ 일반 수입물품의 사전심사 신청 접수일 명확화를 위한 접수증(별지 제39호서식) 신설

□ 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 명칭 변경(§53)

ㅇ ‘특수관계 사전심사 위원회’ 명칭을 ‘특수관계 사전심사 협의회’로 변경

□ 특수관계 사전심사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(§56)

ㅇ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동종·동류비율 산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허용(1개월 → 2개월)

□ 특수관계 사전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규정 명확화(§58)

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 분야 중 과세가격에 관한 사항 제외 명확화

4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5.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6. 시행일자 : 2026. 00. 00.

7. 의견제출 방법

◦ 제 출 처 : 관세청 심사정책과

◦ 담 당 자 : 신근호 사무관(042- 481- 7628)
손동희 주무관(042- 481- 7767)

◦ 제출기한 : 2026. 11. 16.까지

◦ 제출방법 : (이메일) legendhee@korea.kr
(우편) 35208,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관세청 심사정책과